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 · 주의 요구

제 목 준설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 등 처리 및 정산 부적정

기 관 명 울산광역시 ○○군

훈계대상자 ① 울산광역시 ○○군 ○○○○과 지방○○○○ ○○○

② 울산광역시 ○○군 ○○과 지방○○○○ ○○○
(전 ○○○○과)

내 용

지방○○○○ ○○○ 및 지방○○○○ ○○○은 2017. 1. 11.부터 2017. 7. 15.까지 울산광역시 ○○군 ○○○○과에서 준설토 처리 및 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로 각각 근무하였다.

「하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군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2017년 ○○군 ○○도 긴급정비(○○)공사 단가계약”을 실시하고자 2017. 1. 23. ○○○○○○○(주)와 1구역을, 2017. 1. 17. ○○○○○○○과 2구역을, 2017. 1. 20. (주)○○과 3구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계약을 체결(계약액 : 1구역 156,893,100원, 2구역 158,620,810원, 3구

억 123,886,400원)하였다.

1. 폐기물 처리 부적정

「울산광역시 2018년 관내하수시설 긴급준설공사 시방서」에 따르면 준설토는 매립 또는 재활용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준설토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에 따르면 청소 및 준설은 연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적물의 상황 및 관로의 상태에 따라 구간별로 긴급청소 또는 정기청소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준설토사는 「폐기○○○법」에 의한 폐기물에 해당되므로 관계 규정에 적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해야 하고, 분류식으로 된 오수관 청소시 발생하는 찌꺼기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에서 발주한 준설공사의 경우 분류식으로 된 오수관 청소가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찌꺼기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하도록 하여야 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울산광역시 2018년 관내하수시설 긴급준설공사 시방서」 및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준설 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2018년 ○○○시설 ○○○공사(총 3구역)」 계약상대자인 ○○○○(주), ○○○○○○, (주)○○에서는 사업장 폐기물의 직접 처리가 곤란하여 ○○군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직접 찾은 결과 울산광역시 소재 ○○○○○○○와 계약상대자간에 계

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반출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군 오수관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대부분은 준설토가 아니라 음식점 및 가정 등에서 나오는 기름이 굳어진 폐기물과 분뇨, 물티슈들로 구성되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처리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등 규정에 따르면 폐유(기름 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는 지정폐기물, 폐식용유는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준설탁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름으로 굳어진 폐기물 등 「울산광역시 2018년 관내하수시설 긴급준설탁공사 지방서」와 다른 폐기물이 발생하여 처리할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적정처리를 하여야 했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 처리를 거부하자 하수도 업무 자체가 긴급처리 사항(오수 역류 등)으로 신속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환경오염 및 각종 민원이 발생되므로 신속한 민원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19조에 따라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굳어진 기름 폐기물을 망치로 부수어 준설탁한 관 및 인근 유수흐름이 원활한 차집관로 등에 불법 투기하고 물티슈 등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도록 계약상대자(○○○○(주), ○○○○○○○, (주)○○)에게 지시하였고,

또한 오수관에서 발생한 분뇨 역시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에 따라 발생하는 찌꺼기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하

도록 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이 또한 역시 준설한 관 및 인근 유수 흐름이 원활한 차집관로 등에 불법 투기를 지시하였고, 계약상대자(○○○○(주), ○○○○○○○, (주)○○)는 위 관서(감독공무원 지방○○○○ ○○○)의 지시대로 처리하였다.¹⁾

결국 ○○군 지역 특성상 민원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사유로 적정 처리방안에 대해 모색하지 않은 채 굳어진 기름 폐기물 및 분노 등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폐기물관리법」 및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에 따른 처리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재 투기하였다.

2. 정산 업무 처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2018년 ○○○○시설 ○○○○공사(총 3구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써 실제 작업한 수량에 따라 정산을 한 후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의 경우 담당자가 현장에서 매번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소별 물량 실측이 곤란한 실정이고, 단가계약 특성 상 실제 작업물량을 정산하여 대가를 지급해야 함으로 퇴적 높이, 퇴적관의 길이 등 물량을 확인할 수

1) 이 후 감독공무원 지방○○○○ ○○○은 담당팀장인 ○○○○ ○○○에게 구두로 상기 내용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함

있는 계측자료 및 CCTV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 후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해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계약상대자(○○○○(주), ○○○○○○○, (주)○○
○)가 맨홀 등의 막힌 부분에 대한 시공 전·후 사진과 일부 CCTV(3개소)만 제
출하고 실제 작업물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작업물량 전체의 CCTV 및
계측자료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물량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없이 계
약상대자가 제출한 위치도, 현장사진, 물량산출서 등을 근거로 그대로 대가를 지
급하였고,

그 결과 객관적이고 명확한 산출근거가 없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물량을
기준으로 정산함에 따라 어떤 성상의 준설폐기물이 얼마만큼 흡입·준설되었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